

제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 10. 18. 제천시장
- 회부일 : 2006. 10. 18.
- 상정일 : 2006. 10. 25(제1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가. 제안이유

- 2005. 12. 29일 법률 제7777호로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의 폐지에 대한 도지사 보고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시설의 명칭 변경 「간이상수도 ⇒ 마을상수도」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21조)
- 조문 중 폐지사유를 도지사에게 보고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삭제(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동수)

【法的檢討】

- 수도법 제12조와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조등에서 마을상수도의 인가와 시설의 폐지등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을상수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도록 한바 조례의 개정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등에 의거 2006.9.7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行政的檢討】

- 2005. 12. 12. 수도법 제3조, 제12조,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등에서 시설의 명칭 일부중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법규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며, 간이상수도의 인가와 운영관리가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 사항으로 시설폐지 사유에 대한 도지사 보고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음. 단지 관련법 개정시는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임.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신구조문 대비표의 1조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했고,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고쳤는데 간이급수시설의 명칭을 종전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김명섭의원)
-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바꾸었을때 문제점은 전혀 없는지? (김병창의원)
-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명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함임으로 간이급수시설의 명칭도 마을급수시설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유영화의원)

나. 답변요지 <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

-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합쳐서 간이급수시설이라 하고 있으며 단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바꾸는 것임.
- 100인 이상되는 것은 간이상수도, 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칭하고 있으며 수도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없음.
- 통일해줄 필요성이 있으나, 간이급수시설 명칭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적 명칭이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큰 혼선이 올것 같지는 않음.

5. 소수의견

“ 없 음 ”

6. 토론요지

“ 없 음 ”

7. 심사내용

“ 없 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심사보고 불임서류

제천시 간이상수도 ·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